

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(김상욱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279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9. 8.

발 의 자 : 김상욱 · 강대식 · 이종배
김예지 · 조경태 · 이준석
천하람 · 성일종 · 정준호
박홍배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·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.

그런데, 보호자가 안심하고 영유아를 맡기기 위해서는 자질 있는 보육교사를 선발·관리함과 동시에 보육교사가 과도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보육교사의 정신건강에 대해서도 신경 쓸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교육부장관이 직무적합도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검사 결과 심리 상담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을 하도록 하는 한편, 직무적합도 검사 재실시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어린이집 근무를 일정 기간동안 제한함으로써 보호자가 안심하고 경제적·

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19조의2 및 제20조제1호의2 신설).

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9조의2(직무적합도 검사의 실시 등) ① 교육부장관은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 및 보육교사의 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하여 매년 보육교사의 직무 수행 적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검사(이하 “직무적합도 검사”라 한다)를 실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직무적합도 검사는 보육교사에 대한 심리검사를 포함하여야 한다.
- ② 교육부장관은 보육교사가 직무적합도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직무적합도 검사를 재실시하여야 한다.
- ③ 교육부장관은 직무적합도 검사 결과 보육교사에 대한 심리 상담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리 상담 및 치료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④ 제1항에 따른 직무적합도 검사의 실시, 제2항에 따른 직무적합도 검사의 재실시, 제3항에 따른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0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의2.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직무적합도 검사 재 실시 결과 부적합
판정을 받은 경우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19조의2(직무적합도 검사의 실시 등) ① 교육부장관은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 및 보육교사의 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하여 매년 보육교사의 직무 수행 적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검사(이하 “직무적합도 검사”라 한다)를 실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직무적합도 검사는 보육교사에 대한 심리검사를 포함하여야 한다.</u> <u>② 교육부장관은 보육교사가 직무적합도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직무적합도 검사를 재실시하여야 한다.</u> <u>③ 교육부장관은 직무적합도 검사 결과 보육교사에 대한 심리 상담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리 상담 및 치료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u>

제20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없다. 1. (생략) <u><신설></u> 2. 3. (생략)	<u>④ 제1항에 따른 직무적합도 검사의 실시, 제2항에 따른 직무적합도 검사의 재실시, 제3항에 따른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u> 제20조(결격사유)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<u>1의2.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직무적합도 검사 재실시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</u> 2. 3. (현행과 같음)
--	--